

『공공사업자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

정부 투·출자기관 및 자회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공공사업자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율준수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사업자 임직원 공정거래교육』이 지난 10월 4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사업자 공정거래담당 임원 및 간부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한국공정거래협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공공사업자 임직원 공정거래교육』에서 특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허 선 정책국장은 「경쟁정책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국내경쟁에서 나오며, 국내경쟁이 치열할수록 국제경쟁력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력 향상은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궁극적으로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국내경쟁 수준이 기업들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Porter 교수에 의해 실증되었다고 언급했다.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독점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필요하다



며 법 위반으로 인한 임직원, 경영자,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정책총괄과장은 제1주제인 「공기업과 공정거래제도」 발표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의 기본 틀은 경쟁촉진시책, 소비자보호시책, 독립중소기업보호시책,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4개 목적과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9개의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인 경쟁원리가 모든 경제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경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경쟁법의 집행 못지 않게 경쟁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안보다는 기업들이 경쟁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

고 교육·감독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보다 경제적이 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체가 담합 등 경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제재를 받게 되면 대표이사가 주주와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법 위반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며, 경쟁법 준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가 되었고, 국내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자율준수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주제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과 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실태」 주제발

표에서 김길태 심판관리1담당관은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행위가 지적되어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례 중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지난 1999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의 법 위반행위 전체 101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이 45건, 부당내부거래가 2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의 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행위 등 공공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사례를 강의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회장 김용)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업체 및 도입예정업체의 공정거래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월)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총 70개 업체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작성 및 운용방안」에 대한 제1주제발표에서 공정거래협회 홍미경 부장은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법 위반행

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며, 현재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7대 핵심요소 중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CEO 메시지 사례를,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겸직 가능성을, 자율준수편람 제작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예시하였고,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질적 운용과 경감제도 등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에 대해서 사례별로 발표하였다.

제2주제인 「미국·EU의 경쟁법 역외 적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총괄정책과장은 역외 적용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외국기업의 행위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국내에 영업거점이 전혀 없는 역외기업에 대해 국내 경쟁법을 적용·집행하더라도 이를 역외적용이라고 보다는 정당한 관할권 행사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의 역외적용 사례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Showa Denco 등 4개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독일의 BASF 사 등의 비타민 제조회사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인상, 시장분할 등의 카르텔에 대해 총 약 7.3억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언급했다.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손인옥 소비자기획과장은 공동행위

의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외관상의 행위 일치가 사업자간의 사전의사연락에 의한 결과인지, 과점시장에서 우연한 행동의 일치인지 또는 사후적 모방의 결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의추정의 문제이며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과거 당해 사업자 등의 행태, 당해 모임이 시장경쟁에 주는 영향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지난 5월 제정한 공동행위심사기준은 그 의미가 크며, 이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각국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길태 심판관리1담당관은 「부당내부거래 규제외의 및 사례」 발표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1998년도부터 시행하였는데, 독립기업이 재벌 소속 계열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희소한 경제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계열회사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인수 등을 통한 우회지원사례, 기업어음 및 회사채 등의 고가인수를 통한 자금지원행위, 자금 등의 직접 저리대여 등 부당내부거래를 사례별로 설명하였다.

질의/응답

[질의]

금융권에서는 준법감시제도를 2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권의 준법감시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수준을 경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응답]

금융권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핵심 7대 요소를 이행하고 있다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수준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의 준법감시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과의 큰 차이는 없으나, 금융권의 준법감시제도는 금융권 관련 법률로 금융권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 반면,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차이가 있다.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감시인과 자율준수관리자를 겸직하는 등 준법감시 업무와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며,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 7대 요소 중 부족부분만 보완·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의]

미국, 유럽의 역외적용 사례는 많은데, 일본과의 역외적용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역외적용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응답]

일본은 역외적용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이며, 현재까지 일본의 뚜렷한 역외적용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도 『공정거래관련법규집』 구입 안내

한국공정거래협회는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령·고시·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2002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구입방법

- 대금을 입금하신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신청서(www.kfta.org 다운로드)를 기재하여 FAX로 송부하여 주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 입금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31-04-106356
 국민은행 815-01-0378-871
 외환은행 064-22-00366-3
- 예 금 주 : 한국공정거래협회

□ 판매가격(1부 기준)

- 회 원 가 : 4만원(추가구입분)
- 비회원가 : 5만원

□ 출간예정일 : 2002년 11월초 예정(별도안내)

□ 수록내용(양장 겉표지 1,040면 - 법규집목차 참조)

-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고시·지침 등 제/개정 사항
- 공정거래법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고등법원·대법원 판례 등

□ 문의사항

- 공정거래협회 조사부 박영문
- TEL. 775-8870~2 / FAX. 775-8873,8869

2002년도 공정거래관련법규집(목차) 안내

I.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 2)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3)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 4) 공동행위신고자등에대한감면제도운영지침
 - 5) 공동행위심사기준
 -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 운영지침
 - 7) 공정거래위원회소속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
 - 8)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시간절차등에관한규칙
 - 9)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10)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11)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 12) 기업결합관련시정조치불이행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기준
 - 13) 기업결합의신고요령
 - 14) 기업결합심사기준
 - 15)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 16) 대규모기업집단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심사기준
 - 17)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정및공시에관한규정
 - 18)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 기준
 - 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 대한경비지급규정
 -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 정거래위원회의지침
 - 21)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관한지침
 - 22)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 23) 사업지단체활동지침
 - 24)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심사기준
 - 25)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의유형및기준
 - 26) 의결권행사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 27)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 28) 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 29) 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
 - 30)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 등보고에관한요령
 - 31) 체납가산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 32)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II. 가맹사업법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III.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 2) 선급금등지연이자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
- 3)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 4)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 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6)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지침

IV. 약관규제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 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광고실증에관한운영지침
 - 2)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3)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4)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5) 상가등의분양및임대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6) 소비자피해일괄구제에관한운영지침
 - 7) 수상·인중등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8)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9) 임시종지명령에관한운영지침
 - 10)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 11) 정정광고에관한운영지침
 - 12)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 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13) 주택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14)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 15)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 16)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VI. 전자상거래법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시행령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VII.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VIII.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IX. 카르텔일괄정리법

X. 공정거래위원회운영

1. 공정거래위원회조직
2. 공정거래위원회조직제시행규칙
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직권결정규정
4. 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인사관리규정
5.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

『제1기 공정거래법 전문연수과정』 교육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 www.kfta.org)는 공정거래법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일교육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기 공정거래법 전문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전문연수과정은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과 관련법규 해설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전문연수과정 1일차에는 ▷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의 경쟁정책(허선 정책국장)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 집중 억제(김원준 경쟁촉진과장)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김석호 기업결합과장)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조홍선 공동행위과 사무관), 2일차에는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포함(옥화영 유통거래과장) ▷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손해배상, 과징금, 형벌부과 포함(김길태 심판관리1담당관) ▷ 특강I-자율준수프로그램의 작성 및 운용방안(공정거래협회 홍미경 부장) ▷ 특강II-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및 효과(KT 이영남 국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이삼봉 하도급기획과장), 3일차에는 ▷ 불공정약관의 규제(김성만 약관제도과장) ▷ 표시광고의 공정화(이석준 표시광고과장) ▷ 소비자보호 등 관련 공정거래제도(이성구 전자거래보호과장) ▷ 경쟁법의 국제적 적용과 국제협력(한철수 총괄정책과장)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제2기 공정거래법 전문연수과정』교육은 기업체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제1주제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의 경쟁정책

요약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효율성과 지속적 성장을 유도해 왔으며, 이 가운데 경쟁정책이 경제운영의 핵심원리로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1980년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규제·보호·공급자중심의 경제운영에서 자율·경쟁·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이론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있는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국내시장의 활발한 경쟁환경이 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해 왔는데, 최근에 실증연구들을 통해서 이를 명확히 입증하였다.



허 선(공정위 정책국장)

기업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경쟁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정책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것으로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경쟁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핵심가치(Core Value)중 하나이다. 결국 경쟁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박을 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글로벌 경제하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은 국내 기업들간 경쟁의 정도에 달려있다. 먼저 국내시장의 경쟁은 기업의 혁신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줌으로써 지속적 생산성 증대를 가능케 한다.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은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밖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국내 경쟁은 기업들이 더 높은 효율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한다. 결국 경제가 완전히 개방되어 무역과 투자가 자유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기업들에 의한 경쟁제한적 관행이 존재하고,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나 국제카르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따라서 경제의 대외개방 정도가 커질수록 그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쟁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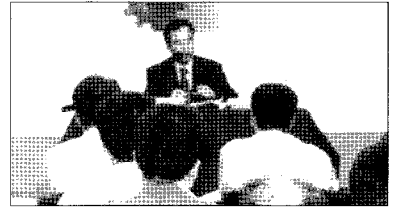
Porter(2000)는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미시경제적 환경변수들, 특히 경쟁정책과 국내적 경쟁 정도의 차이로서 국가간 경제성장의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편, 미시적 환경변수들의 변화와 1인당 GDP 성장률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국내적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1인당 GDP 성장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Porter, Takeuchi & Sakakibara(2000)는 전후부터 90년대에 걸쳐 일본의 20개 산업을 포괄하는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실증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의 경우 정부의 보호와 간섭에 의해 경쟁이 제한된 산업들보다 오히려 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난 산업 영역에서 더욱 생산성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제2주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

▶▶ 요약

독과점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옹호론과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반대론에 입각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독과점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접근방법으로서 구조규제와 행위규제를 하고 있다. 구조규제란 독점력의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독과점시장의 구조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될수록 경쟁이 악화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에서 도입된 이 방식은 실효성이 높은 반면 민간부문에 정부가 너무 간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위규제란 독과점구조 자체는 인정하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에서는 경쟁자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임의적으로 시장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독점적 시장지배”로 규정하고 시장의 경쟁조건으로 보아 과점기업 상호간에 내부경쟁이 결여되어 있거나 과점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외부자에 비하여 압도적인 경우를 “과점적 시장지배”로 규정하고 있다.



김원준(공정위 경쟁촉진과장)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의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광공업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하며 국내기업의 총출하액을 기준으로 시장구조통계를 작성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조사 공표제(제3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로서 ①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②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사업자(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제4조), 공정위의 능동적 문제발굴과 구조적 접근방법 등의 독과점 구조개선시책 추진(제3조), 일정한 거래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남용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제3조의2)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대두 등 최근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재벌정책이 대폭 개편되었다. 즉 기업집단의 지정방식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일률지정에서 행태별 지정으로 각각 전환하였으며 공기업도 지정대상에 포함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핵심역량에의 집중을 위한 출자는 허용하였으며 기존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해소시한인 2002년 3월말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제한키로 하였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동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내부거래공시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제3주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

▶▶▶ 요약

기업결합이란 서로 독립된 기업들을 통일적인 의사결정 및 관리 체제 안에서 활동하도록 조직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나 매출의 극대화 등을 위한 동기에서 발생하기도 하나, 시장을 지배하거나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결합 유형은 거래관계 형태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간 결합 또는 동일지역 백화점과의 결합과 같



김석호(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은 경쟁기업간의 기업결합인 수평결합과 정유회사와 유류판매업체간의 결합이나 TV 생산회사가 브라운관 생산회사와 결합 등 상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여러 단계중 인접한 단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행위인 수직결합, 수평결합 또는 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인 혼합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또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1,000억원(영제18조) 이상인 회사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아니나, 피결합회사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회사는 신고해야 하며, 사전·사후 신고를 막론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결합 계획에 대한 범위만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30일(60일 연장가능)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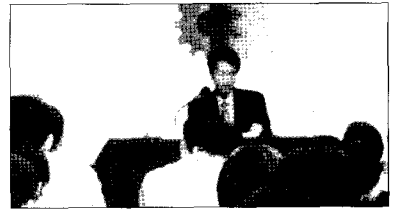
신고된 기업결합 중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하는 혼합결합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15일 이내에 심사처리하고, 간이심사대상 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이며 30일 이내(60일 연장가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평결합의 심사요소로는 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 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를 심사하며, 수직결합의 심사요소로는 시장점유율 외에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 확보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등의 제요소를 고려하는 시장의 봉쇄효과와 기타 진입장벽의 증대여부 등을 심사요소로 하며, 혼합결합의 경우 취득회사가 대규모회사, 잠재적 진입자, 상대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사 50% 또는 3사 합계 70%기준에 해당되며, 취득회사와 상대회사의 경쟁자간에 사업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주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요약

공동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논의는 크게 2가지가 그 주류를 이룬다. 첫째는 과연 기업들이 특정한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의 합치가 서로의 의사연락에 의한 결과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논의는 모든 공동행위가 다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공정거래법은 공동행위의 개념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홍선(공정위 공동행위과 사무관)

현행 독일법에서는 공동행위 개념을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합의 또는 사업자단체의 결의 그리고 상호동조적 행동으로서 경쟁을 방해·제한·왜곡하는 목적을 가지거나 결과적으로 경쟁을 방해·제한·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독일경쟁제한방지법 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법상의 공동행위 개념은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기타 형태에 의한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다”는 셔먼법 제1조, 전단에서 나타난다.

공동행위의 개념 또는 유형에 관한 한국 공정거래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간 협력이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동행위의 개념규정에 대한 두 번째의 특징은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반드시 경쟁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법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동행위에 관한 한국법의 세 번째 특징은 기업들간의 합의만 있어도 공동행위가 성립됨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시적 합의이건 또는 묵시적 합의이건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각국은 일정한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법원이 판례로서 합의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간의 심결례를 보면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관하여는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 원칙이라는 2가지 접근방법이 있어 왔다. 당연위법의 원칙은 공동행위의 존재, 즉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바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합리원칙은 공동행위가 실제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여 공동행위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동 심사기준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지침이 규정하는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절차와 기준을 한국적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기업간 협력을 먼저 경성공동행위와 기타의 공동행위로 구분하고, 경성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별

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거치지 않고 위법성을 인정한다. 사업자는 비록 경쟁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행위이라 해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의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의 추정 문제는 외관상의 행위 일치가 사업자간의 사전의사연락에 의한 결과인지 또는 과점시장에서 우연한 행동의 일치인지, 사후적 모방의 결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간 미국, 유럽 등에서 예컨대 가격정보의 교환, 가격의 사전공표 등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격정보교환 등 사업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과거 당해 사업자들의 행태, 당해 모임이 시장경쟁에 주는 영향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외국의 경우 이를 공동행위 금지조항에 같이 규정하는 사례는 많이 있으나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하여 규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많은 사업자단체를 정부가 육성하고 이를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집행한 결과 경제운영에 있어서 사업자단체의 역할이 큰 역할을 차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외국의 규제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일본의 경우인데,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독점금지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등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단체의 임원 등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재판소는 동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해 경쟁법 위반이 야기되었을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

▶▶ 질의/응답

- **질의** | 외국사업자가 국내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응답** | 외국사업자가 국내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는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질의** | 계열사간에 공동구매를 할 경우 공동행위인지 여부
- ▶ **응답** | 계열사간에는 경쟁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행위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제5주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

▶▶▶ 요약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국내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 경쟁수단의 공정성, 자유경쟁기반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즉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옥화영(공정위 유통거래과장)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지배적사업자규제,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기업결합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판례법상 해석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즉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이다. 당연위법의 원칙이라 함은 범위반 요건사실만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범위반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칙상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일 경우 당연한 위법으로 보는 것이다. 합리의 원칙은 공정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느냐에 따른다. 이는 개별 사건 별로 범위반사실 및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예시하였고 이에 대한 별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고시를 두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 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 및 기타의 거래거절(단독 거래거절)로 구분되어진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주로 간접거절이면서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되고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안별로 공정거래 저해성을 따져서 위법성을 판단한다. 즉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 차별취급에는 가격차별과 거래조건차별로 대별된다. 결국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차별이다.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은 계열사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당연 위법이고 현재는 부당내부거래로 흡수되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7호의 규정을 받는다.

▷ 경쟁사업자의 배제에서 부당염매는 흔히 말하는 덤핑과 같이 계속적으로 부당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보통원가의 6%정도 낮게 계속하여 판매할 경우를 말한다. 부당고가매입의 경우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유인을 유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 서비스, 상품 등을 말한다. 경쟁사업자고객이라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쟁사업자 고객도 된다. 이에 대한 해석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위

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피라미드와 같이 사술에 의한 고객유인을 예로 들 수 있다.

▷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이 있다. 거래강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끼워팔기이다. 이는 주된상품에 종된상품을 파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기있는 소주를 판매함에 있어서 인기없는 자사의 포도주를 구입하지 않으면 소주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포도주를 판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원판매는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며 이를 법적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강제성여부이다.

▷ 거래상지위의 남용은 미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독일, 일본, 우리 나라의 제도이다. 이 유형은 대부분이 민사법의 적용을 받아 이를 적용 할 수 있으나 모든 사항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 이에 대한 단절을 의미함으로 거래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민사법의 특별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형은 구입강제가 대표적이다.

▷ 구속조건부거래의 배타조건부거래라 함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제조업체나 유력한 유통업자가 대리점에게 자기 경쟁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거래하는 것이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협의의 구속조건부거래라고 한다. 이에 대한 것으로는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거래수량, 리베이트지급방법, 영업방법 등 영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과 거래지역에만 국한하고 있다.

▷ 사업활동방해에 대한 규제는 개별사업자간의 사적분쟁이라는 측면이 있고 사회 윤리적으로 볼 때 비난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침해된 권리에 대해 민법, 상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구제받거나 형법에 의해 업무방해행위로서 처벌받기도 한다.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이 대표적이다.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은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에 의거 규제하고 있다.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업자에 가격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재판매가가격이 허용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을 말한다.

제6주제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요약**

공정거래사건 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됨으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든지 아니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공정거래사건은 사건의 인지 또는 신고접수에 의해 법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심사착수를 보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신고인이나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각각 당사자가 된다. 특히 사건화(심사절차의 개시)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의 정의에 맞지 않거나, 위반행위 종결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신고가 취하된 경우 또는 신고가 무기명 내지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등은 불개시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심사절차 불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건의 조사 및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공정위의 심사관이나 조사공무원은 각종 사건조사 권한을 갖는데 예를 들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현장출입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거부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는 출석요구서나 보고·제출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의 경우 조사에 한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권한은 2004년 2월 4일까지만 유효하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당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43개 기업집단의 조사와 관련해서만 발동이 가능하고 셋째,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넷째,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합의과정은 전원회의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회의의 경우는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합의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자는 행정소송 제기시 법원이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집행정지 조항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시정조치명령중 위반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해서만 인용되며 과징금



김길태(공정위 심판관리담당관)

납부명령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질의/응답

- **질의** | 약관법과 관련하여 약관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시정명령의 효력이 어느 시점부터 발효가 되는지 여부
- ▶ **응답** | 시정명령의 효력은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정명령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행의 죄가 성립하고 벌칙규정이 있다.
- **질의** | 시정조치를 받고 집행중지나 행위중지명령에 대해 공정위에 가처분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가처분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과징금 경우가 아니라 시정조치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응답** | 시정조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집행정지 제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때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과징금을 반환하기 때문이다. 과징금의 경우가 아니라 시정조치의 경우는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되고, 법원에서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고발이 정지되고, 패소할 경우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당하게 된다.
- **질의**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공정위의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이 있는지 여부
- ▶ **응답** | 법 49조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법 50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는 상당부분 제보 및 공시자료에 의해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대규모 기획조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제보와 자료분석을 통해 조사를 착수하게 되며 예비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조사 필요성을 확보한 다음 조사를 하게 되며, 직권조사의 경우 대부분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 **질의** | 3가지 혐의중 2가지는 의결서에 기재되었고 나머지 1가지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지 여부
- ▶ **응답** | 무혐의는 의결서에 기재하지 않는데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무혐의로 봐야 한다.

특 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작성 및 운용방안

▶▶▶ 요약

2001년 7월 5일에 업계에 권고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업체의 수는 10월 현재 70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관련 범위반시 일정수준의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7대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운용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은 영위 업종에 맞게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거래관련 교육은 반드시 내부 교육만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당 협회나 각종 사업자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경쟁당국은 기업이 범위반자에 대한 제재시 작성한 관련 문서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 KT는 업계 최초로 과징금 20%의 경감 혜택을 받은 반면에 일부 기업의 경우 내부 감독체제 구축의 미비, 범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관여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 및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들어가 있으며, 공정거래협회는 내년 1/4분기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이행평가대회를 개최하여 동 제도의 실질적 운용 및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홍미경(공정거래협회 조사부장)

특 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및 효과

▶▶▶ 요약

산업경계의 붕괴 및 경쟁심화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발생개연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기업의 경영철학은 공정경쟁을 마케팅전략의 최대변수로 고려하고, 고객지향적 마케팅에 공정경쟁을 접목하여 사회적 마케팅을 정착해야 하며, 공정경쟁을 통해 국내 시장의 선도적 지위유지 및 세계적 사업자로 부상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2002년 이전까지 공정경쟁 기준을 업무절차에 정착시키고, 공정경쟁 편람발간, 전문가 육성, 공정경쟁 사전검증제 시행, 시장환경에 조화된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2002년 이후에는 공정경쟁 정보인프라 확충, 자율준수능력 제고, 새로운 룰(Rule)의 적응능력 제고, 자율준수 실행력 강화 및 성과관리 그리고 성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영남(KT 국장)

제7주제 하도급법 해설

▶▶▶ 요약

하도급거래는 1982년 이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 원사업자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를 보호, 지원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1884년 12월 31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하도급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로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요건, 수급사업자 요건 및 하도급거래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삼봉(공정위 하도급기획과장)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8개의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면 미교부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지연이자의 미지급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해마다 2-3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해 오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범위반 유형인 서면 미교부행위는 하도급거래로 인한 분쟁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모든 하도급거래시에는 서면 교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선급금은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도급업자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기일을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은행 이자율이 5% 내외인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지연이자율은 수급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반면 원사업자에게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급금을 지연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분쟁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도급순위 100위 미만 건설업자, 연간 매출액 2,500억 미만의 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내린 심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현금결제비율이 높다든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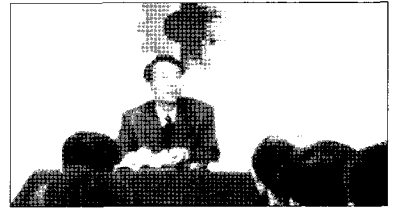
■ 질의 | 하도급 거래에서 저가심사제도가 불공정한 제도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 응답 | 저가심사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부실공사를 막고자 하는데 있다. 하도급법에는 저가하도급을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부당한 하도급이 아니다.

제8주제 불공정약관의 규제

▶▶▶ 요약

현대의 대량거래사회에서는 거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복잡, 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나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불공정약관의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약관의 수는 대략 공공분야는 제외하더라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민간분야의 약관은 33만종이 된다.



김성만(공정위 약관제도과장)

약관의 작성자는 대개 사업자이다. 책임조항, 위약금조항, 해지조항, 손해배상조항 등을 작성자의 위치에서 작성할 것이다. 이에 소비자 등 고객의 입장에서는 약관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방식은 개별법률에 의한 방법, 즉 방판법, 할부거래법 등이다. 다음은 사법당국에 의한 사법규제이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는 행정적 규제방식이다.

약관규제의 일반법인 동시에 소비자보호법의 일종으로써 강행규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법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영역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약관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익도 고려하여 공평한 계약내용을 마련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약관법은 약관의 규제에 대한 일반법, 행정법규, 소비자보호법, 강행규정이다.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명시설명의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약관조항을 여러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당해 계약에 적용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또한 약관조항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를 심사하여 그 조항의 효력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표준약관이라 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2002년 9월까지 19개분야 37개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있다. 향후 결혼정보업, 장례식장, 예식장, 자동차신차구입, 정수기 구입, 무인경보기 등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 질의/응답

- 질의 | 최종적으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이 될 때 그 조항자체를 삭제해서 승인하는지, 다시 위원회에서 문구를 수정해서 승인하는지, 아니면 승인 및 불승인만 심사하는지 여부
- ▶ 응답 | 대개 협의해서 수정하여 심의하고, 삭제해서 심의하는 경우는 최종적인 경우이다. 이는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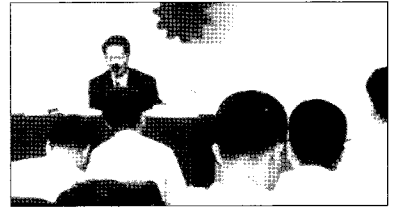
에서 책임을 지고 표준약관을 만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원회의 표준약관은 사전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으나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다시 개정작업을 거친다.

- **질의**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서 보통의 조항에 대해서는 검정색으로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인쇄하여 사용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한 것인지 여부
- ▶ **응답** | 굵은 활자, 주기 등으로 하라고 권장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설명의무를 쉽게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하였으니 도장만 찍었으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취약하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렌트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설명의무가 추정된 것으로 본다. 이는 분쟁이 많을 경우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을 경우 법원에 가면 사업자가 승소할 것이다.
- **질의** | 고객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신고할 경우 위원회의 사건진행절차는 어떠한지
- ▶ **응답** | 인터넷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며, 모든 사항의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신고접수를 통보하고 피심인에게는 신고접수에 대한 청구의견을 보내며, 관련된 자료 및 조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심사 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다. 아울러 간단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정권고 등으로 처리한다. 인터넷 질의의 경우 바로 답신하며, 심사청구가 필요한 것은 서면심사청구를 하고, 시정명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 **질의** | 약관은 고객 및 소비자와의 관계인데 사업자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약관에 해당되는지 또한 과거 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심사를 한 경우가 있는지
- ▶ **응답** | 사업자가 만든 표준계약서는 전형적인 약관이다. 약관의 형식은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 관계없다. 사업자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도 약관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실제 하도급에서도 자동차 부품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 **질의** | 기존 약관에 문제가 있어 현 시점에서 시정을 하였다면 과거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용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약관에 대한 기업체의 질의에 즉답이 가능한지 여부
- ▶ **응답** | 과거의 약관이 문제가 있더라도 시정을 하겠다고 크게 다루지 않는다. 향후 시정조치하고 개선하여야 할 불공정약관이 너무 많아 과거에 일에 대해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회사의 약관을 검증하는 것은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다. 변호사가 할 일이다.
- **질의** | 약관제도과에서 앞으로 표준약관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 **응답** | 2005년까지 100대 분야를 할 계획이다. 업종은 산업분류표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금년도에도 15개 분야, 내년도부터는 25개 분야로 늘어날 것이고 표준약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할 계획이다.

제9주제 표시광고의 공정화

▶▶▶ 요약

표시광고법에서 어려운 문제 역시 표시라든지 광고라는 용어의 정의이다. 표시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 등의 용기, 포장, 사용설명서,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 등을 말하며 광고란 신문, 방송,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것이나 실연에 의한 것은 표시광고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석준(공정위 표시광고과장)

표시광고법상의 부당광고의 판단기준은 소비자오인성에 있으며 평균이하의 국민 중에서 20%이상인 오인을 하면 일단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향후 방송광고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가급적이면 사전심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후 구제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자율 규제와 특히 비교표시광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백하게 의심이 가고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로부터 하여금 표시·광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 공인기관의 실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질의/응답

- **질의** | 표시광고 행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광고시행 후 소비자의 오인인데, 시정명령은 소비자 오인을 치유하지 못한다. 행위중지나 과징금도 피해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정광고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정정광고를 부과한 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응답** | 표시광고 위반의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을 문제로 삼는데 시정조치 수단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범위반사실 신문공표도 이런 역할을 하여 왔고, 정정광고도 시행해 왔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정광고를 시행할 지침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침을 개정하여 범위반사실의 명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 질의에 대해서 공정위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제10주제 소비자보호 등 관련 공정거래제도

▶▶ 요약

기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통신(전자상거래)·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사항을 함께 규정하였다. 방문·다단계 판매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는 비효율적이었고, 통신판매 관련 규정은 인터넷상거래에 적용하기가 곤란하였으며, 법을 운용하는 부서가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됨으로 인해 법집행체계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규정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경제에 대응한 소비자보호의 법제를 마련하면서 소비자피해 다발 거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법을 개정함으로써 방문·다단계판매, 통신판매만을 규율한 것을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이는 소비자피해신고 유형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성구(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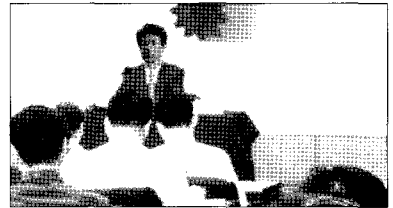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용 대상 확대, 청약의 철회 등 개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두어 거래안전을 도모하였고, 청약의 함으로써 3일의 영업일 이내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제수단 제공자의 책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소비자정보 이용의 합리화와 소비자보호지침을 도입하여 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능 보완하였다. 즉 과거의 영업정지, 형사벌 외에 직권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 등은 다소 완화하였다. 또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였으며, 소비자보호관련 평가 및 인증의 공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래에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단순한 것은 분쟁조정기구에 이첩하여 분쟁조정기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의/응답

- **질의** | 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나 방문판매회사에게 채무상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상계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장기 3일이며, 금액을 지불 후 채무상계를 요청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상계 할 채무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방안은
- ▶ **응답** | 가맹점보증금을 받은 경우, 계속거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금은 결제했지만 다음 번에 결제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결제금을 보류하면 된다.
- **질의** | 홈쇼핑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 철회의 기간을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 있는 날로부터 3월과 안 날로부터 30일인데 이것을 보면 총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인지 여부
- ▶ **응답** | 둘 중에서 짧은 기간이 적용된다. 육안의 확인은 30일 이내이고 기능에 관한 것은 3개월이다.

제11주제 경쟁법의 국제적 적용과 국제협력**요약**

역외적용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외국기업의 행위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법의 사물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과 관련, 제일 많은 판례가 축적된 나라는 미국으로서 1945년 ALCOA 사건에서 외국인의 국경밖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미국 국경내에 미국법이 금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이 1945년 이래 근본원칙으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한철수(공정위 총괄정책과장)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의 조사개시 요청·신고·직권인지 등을 통하여 조사를 착수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하게 되며, 본 조사는 강제절차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예비조사와 차이가 있다. 본조사가 종결되면 합의해결, 긴급중지명령소송제기, 심판제기, 조사종결 네가지의 갈래로 진행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범위반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시정조치 절차에 들어가는데, 시정조치는 동의명령, 행정심판을 통한 시정명령 부과 등의 행정적 절차와 법원에의 제소를 통해 중지명령이나 이에 상응하는 벌금 등의 사법적 절차가 있다.

역외적용에 필요한 정보·자료는 피해자의 정보제공, 역내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면책제도에 의한 자발적 정보제공,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데, 미국의 경우 면책제도인 Leniency 제도를 통하여 감경수준을 대폭 올려 조사시작 이전 신고시에는 자동 완전면제를, 조사시작 이후에는 카르텔 참가법인이 카르텔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완전면제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협력채널은 공식적인 국제기구, 비공식 다자간협의체, 지역협정, 양자협정 등 크게 네 개로 분류가 가능하며, OECD는 초국경적 합병이슈에 대한 최초의 대응노력으로서 Whish-Wood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초국경적 합병에 관한 사전신고양식 권고」를 채택하였고, 경쟁위원회는 현재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있다.

질의/응답

- **질의**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기업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우월적지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응답** | 국내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법적으로 관할권이 성립된다. 다만 강제조사와 과징금의 이행확보가 문제인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해외기업이 국내에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확보할 수 있다.